

제247회 임시회

1

시정질의

구미시의회 의원 신문식
2021. 03. 10.

- 論語 季氏篇 -

不患貧 患不均

백성은 가난함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지 못함에 분노한다.

1. 구미상생형 일자리

- ▶ 2019년 7월 25일 MOU체결, 현재 1년 8개월 경과, 사업신청 지지부진
- ▶ 당초 착공 계획이 2020년이었으나 2021년 상반기로 미루어 졌고, 이마저도 불투명한 현실
- ▶ 늦은 출발의 군산 및 부산은 사업 신청이 완료되고 정부 승인 상태

2. 고아 제 2공단

- ▶ 사업 기간: 2015년 12월 ~ 2022년 6월
- ▶ 사업 면적: 263,411 m²(79,821평)
- ▶ 분양 면적: 165,102 m²(50,030평)
(나머지 면적 98,309 m²(29,791평)은 지원 및 공공용지)
- ▶ 총 공사비 555억원(전액 시비)
(공사비 187억원, 보상금 313억원, 기타 55억원)
- ▶ 평당 분양 금액: 110만원/3.3 m²(평)

2. 고아 제 2공단

- ▶ 2020년 까지 집행 금액 450억(지방채 300억 포함)
(지방채 300억, 이자 부담액 연간 4억)
- ▶ 2022년 6월 준공 목표
- ▶ 주무과 과장 인터뷰
“조성에 들인 비용만큼만 분양가를 받기로 한 거다.”
- 분양가는 얼마?

3. 정수대전

▷ 상근자 수당 및 인건비

(단위: 만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월	년 간	월	년 간	월	년 간	월	년 간	
상근자 A	350	2,800	350	2,450	350	2,800	350	2,100	10,150
상근자 B	180	1,800	250	2,000	242	1,940	242	1,937	7,740
합 계	4,600		4,450		4,740		4,037		17,827

3. 정수대전

▷ 수입금 정산 미실시

- 행사 수입금인 작가들의 출품료를 정산 없이 취함.
(매년 약 7,000만원 십수억예상)
- 수입금 정산 관련 행안부 유권해석 및 유선 답변 내용
 - ☞ 교부 조건 위반하여 집행하면 보조금 교부 취소 및 반환 받는 것이 가능하다.
 - ☞ 지방재정법 예규에 따르면 보조금이든 자부담 이든 사업을 하면서 생긴 수입금은 반드시 정산을 하여야 한다.

3. 정수대전

▷ 수입금 정산 미실시

- 자부담 교부조건

구미시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5.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해 자체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 정리하되 정산보고 시 집행 잔액과 별도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를 포함 반납하여야 합니다. (보조비율에 따라 반납)

또한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보조금과 함께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수익금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과 보조사업자 자부담금 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총 수익금에서 보조금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내역서에서 발체)

3. 정수대전

▷ 수입금 부당 정산예

- 2017년 표구비 수입금(출품자에게서 각출)
☞ 12,520,000원
- 2017년 자부담 표구비 집행금액
☞ 8,291,660원
- 수입금 과 집행금 차액: ☞ 4,228,340원
(이 금액중 총사업비 대비 교부금과 자부담비율을 계상 하여
교부금 비율 80%의 금액 3,382,672원을 반납하여야 한다.)

3. 정수대전

- ▷ 구미시 보조금운영 지침
- 수입금 집행 예시

< 예상수입금에 대한 집행계획서 > (예시)					
수입금			지출계획(자부담 인정가능)		
대회참가비	10,000원 * 200명 =	2,000	대회음식 준비	1,500,000원 * 1식 =	1,500
푸드코트운영	7,000원 * 150명 * 2식 =	2,100	시 상 금	130,000원 * 20명 =	2,600
총 계		= 4,100	총 계		= 4,100

* 수입금은 보조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사업성 경비로만 지출 가능

- 2020년 사업계획의 수입금 집행 계획

○ 예상수입금에 대한 집행계획서

수입금			지출계획(자부담)	
-서예,문인화대전 출품료	40,000원×400명=	16,000,000원	-자부담 상환	68,000,000원
-사진대전 출품료	50,000원×200명=	10,000,000원		
-미술대전 출품료	50,000원×600명=	30,000,000원		
-표구비	40,000원×300명=	12,000,000원		
합계		68,000,000원	합계	68,000,000원

4. 금오산 맥우

▷ 사업 목적

- 지역 한우 명품화와 지역 축산업 농가 소득향상

▷ 보조금 교부 내역(8억8천만원)

- 남통동 직판장 및 사료: 3억1,800만원
- 도개 직판장 및 사료: 2억3,200만원
- 축사 및 사료: 3억3,000만원

4. 금오산 맥우

▷ 남통동 직매장에 보조금으로 매장 증축

- 2012년 84.04m² 증축, (5,170만원, 보조금)
- 지주와 협의 문서없이 사유지에 증축으로 판단
- 2017년 양도되어 건물이 멸실
- 2019년 9월 조사특위에서 문제점 지적 및 적의 조치 요구
- 이후 아무런 조치가 없어 2019년 12월 시정 질의를 통하여 재차 지적
- 2020년 6월까지 역시 아무런 조치가 없어 다시 서면 질의를 통하여 다시 적절한 조치 재촉
- 감사 실시 통보 받음
- 현재 감사 완료 되었지만, 감사 결과 자료 제출 거부

4. 금오산 맥우

▷ 건축물 관리대장에서 발취

2012.09.21. 1층 소매점 40.96㎡, 1층 일반음식점 43.08㎡ 증축[2012-건축과-증축신고-67]

2017.08.16. 건축물 철거 완료 통보(건축과-31015)에 의거 대장 말소[2017-건축과-철거-166]

- 이하여백 -

4. 금오산 맥우

▷ 보조금으로 취한 부동산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재산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4. 금오산 맥우

▷ 보조금으로 취한 부동산 관련 법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제37조의5(처분을 제한하는 재산 등) ① 법 제32조의9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중요재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4. 금오산 맥우

▷ 보조금으로 취한 부동산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4. 금오산 맥우

▷ 보조금으로 취한 부동산 관련 법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6조의6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위반한 자
3.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5. 꽃동산 사업변경

▷ 사업 의회 상정 사업변경 내용

(면적 단위: m²)

구 분	일 자	시설 면적	건물 면적	세 대 수	비 고
1차 상정	2019.12.	111,549	698,000	3,323	부 결
2차 상정	2020.01.	111,549	698,000	2,872	의 결

※ 아파트 세대수가 줄었으며 세대수가 줄어든 만큼 다른 용도의 건물로 변경

5. 꽃동산 사업변경

▷ 사업변경 과정의 위법 내용

-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특례에 관한 지침
제3장 제안에 의한 행위특례사업 시행절차

제5절 도시공원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3-5-1. 시장·군수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제안을** 수용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원조성계획을 입안)하고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원조성계획을 결정(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시공원위원회는 공원시설 등 공원조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원시설의 종류 및 규모,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공원부지의 용도지역, 그 밖에 시장·군수가 심의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 구미시는 사업변경에 따른 심의 지침을 어기고 시의회에 부의함

6. 부정한 행정

▷ 옹벽 공사

- 옹벽 길이

 설계 17.4m, 실제 시공 9.5m

- 옹벽 폭

 설계 0.3m, 실제 시공 0.2m

- 옹벽 높이

 설계 1.0m, 실제 시공 1.0m

6. 부정한 행정

▷ 옹벽 공사

- 바닥 및 사면 터파기 설계

공종	품명	규격	수량	단위
1.	토공			
	터파기	백호(0.4㎡)80%+인력20%	355	㎡
	되메우기	백호(0.4㎡)80%+인력20%	11	㎡
	사토운반(토사)	L=5km	344	㎡

6. 부정한 행정

▷ 옹벽 공사

- 바닥 및 사면 터파기 설계

 - ☞ 355 m³

- 바닥 터파기 실제

 - ☞ 11 m³

- 사면 터파기 실제

 - ☞ 45 m³

※ 실제 56 m³ 터파기 토사를 355 m³로 설계

※ 되메우기 없이 모두를 사토 운반을 해도 56 m³ 인데
설계상의 사토 운반은 344 m³임

6. 부정한 행정

▷ 옹벽 공사

- 이렇게 공사한 특정 업체가 3년간 관내 입찰 및 수의 계약 33건에 5억7천만원 수주 및 공사시행
- 이 공사에 대하여 집행부는 910만원을 환수하고 다른 공사를 감사 한결과 부정한 사항으로 인한 공사 금액 환수 사항이 발견되어 행정 조치 하고자 했으나 이 업체는 현재 폐업이 된 상태입니다.

7. 행사 비품 렌트비 집행 불공정

▷ 비품 렌트비

품 명	규 격	최고가	최저가	시장가
텐 트	3 X 3	90,000	30,000	20,000
텐 트	3 X 6	55,000	30,000	30,000
몽골 텐트	3 X 3	110,000	50,000	60,000
몽골 텐트	5 X 5	150,000	100,000	100,000
탁 자	1.8 X 0.7	30,000	8,000	10,000
팔걸이의자	-	2,000	1,000	1,000

8. 성리학 역사관



8. 성리학 역사관

- ▷ 251억원 예산으로 2013년 기획 2020년 완공
- ▷ 일부 토지는 매입하고 일부 토지는 기부 채납
 - 110,691 m² 12억4천만원으로 매입
 - S문중 1,719 m²를 구미시로 기부 채납
- ▷ 추진위원회와 S문중 합의
 - 매입 및 기부 채납 받은 토지 중 1,500 m²을 용도 변경 하여 S문중으로 분할 등기를 약속
(S문중은 이 토지에 신도비 이전과 관리사를 짓는다 함.)

8. 성리학 역사관

- ▷ S문중은 대대손손 내려오던 문중땅을 구미성리학역사관 사업에 선뜻 기부하였고...



9. 청렴직통 CALL

▷ 2019년 2월 보도자료



장세용 구미시장은
“기관의 청렴도를 저해하는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의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할 것”
이라면서

“43만 구미시민에게 약속한
청렴구미 건설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제247회 임시회

감 사 합 니 다.

구미시의회 의원 신문식

2021. 03. 10.